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빠른환매미국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빠른환매미국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빠른환매미국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3년 10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년 11월 2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02-2168-7900, <http://www.yurie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므로 편입중인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투자대상자산은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으로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0.663	0.30	0.590	1.057	108	222	342	599	1,36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 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394%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며, Class A-e와 Class 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 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운용 전문인력	<table><tr><th rowspan="3">성명</th><th rowspan="3">생년</th><th rowspan="3">직위</th><th colspan="2">운용현황</th><th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재간접형)</th><th rowspan="3">운용 경력 년수</th></tr><tr><th rowspan="2">집합투 자기구 수(개)</th><th rowspan="2">운용 규모 (억원)</th><th colspan="2">운용역</th><th colspan="2">운용사</th></tr><tr><th>최근 1년</th><th>최근 2년</th><th>최근 1년</th><th>최근 2년</th></tr><tr><td>안재정</td><td>1972</td><td>책임(본부장)</td><td rowspan="2">17</td><td rowspan="2">5,399</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5년3개월</td></tr><tr><td>노승진</td><td>1984</td><td>부책임(차장)</td><td>5년</td></tr></table>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안재정	1972	책임(본부장)	17	5,399	-	-	-	-	5년3개월	노승진	1984	부책임(차장)	5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안재정	1972	책임(본부장)	17	5,399	-	-	-	-	5년3개월																																			
노승진	1984	부책임(차장)	5년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 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유리자산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 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 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 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특히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 는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인 기준가격과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및 시장 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 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화 표시 자산이나 실질적인 환노출전략인 자산의 환위험 관리 전략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원화 표시 자산임에도 실질적으로 환노출전략인 자산에 대하여 <u>NAV의 10%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자통화에 대한 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u> 따라서 NAV의 10% 수준에서 환노출전략 자산은 환위험 변동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경제적인 기타변수 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화표시 자산이나 실질적으로 환노출전략인 자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헷지 거래규모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원화표시 자산이나 실질적으로 환노출전략인 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회피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u>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u>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화 표시 자산이나 실질적으로 환노출전략인 자산의 환율 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 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시 계약 조건에 의해 현재 환율이 계약환율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유리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168-79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yurieasset.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3년 11월 28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일정금액 이상을 매입한 고액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리빠른환매미국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090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0951
수수료선취-온라인(A-e)	E095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0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09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09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E09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09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E09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E09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E09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E09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E098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09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09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E09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개시(2023년 3월 19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 · 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리빠른환매미국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090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0951
수수료선취-온라인(A-e)	E095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0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09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09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E09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09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E09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E09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E09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E09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E098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09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09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E09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3. 7. 3	- 최초 설정
2023.11.28	- 투자신탁보수율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대표전화 : 02-2168-79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2023.10.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안재정	1972	책임(본부장)	17	5,399	-	-	-	-	5년3개월
노승진	1984	부책임(차장)			-	-	-	-	5년
<이력>									
책임(본부장) 안재정					부책임(차장) 노승진				
- '00.10~'16.10. 하나UBS자산운용					- '10.06~'15.10. NH선물				
- '17.10~'18.07. 에셋원자산운용					- '15.10~'18.10. 대신증권				
- '18.07~현재. 유리자산운용 해외투자본부					- '18.10~현재. 유리자산운용 해외투자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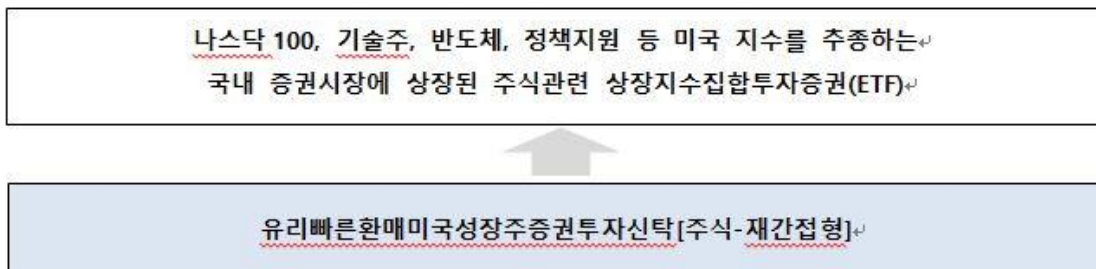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적을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적은 유리자산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수수료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일정금액 이상을 매입한 고액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도 미국 성장주 운용성과를 추종하는 다양한 대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들은 미래 투자 유망한 성장섹터와 관련한 다양한 지수를 추종하여 자본차익 및 배당 수익 등을 추구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선정 기준]

이 투자신탁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중, 미국 성장주를 대표하는 지수 또는 미래 성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섹터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를 선별하고, 선별된 ETF 중에서 시가총액, 운용성과뿐만 아니라, 지수추종의 적합성, 거래비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선정합니다. 또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 비용 및 배당수익 등 추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선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내용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60% 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증권 대여 ^{주1)}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증권 차입 ^{주2)}	20% 이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등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 에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다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신탁계약서 제17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자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지분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 기준 등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주된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등 정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미국 대표 성장주(나스닥100, 기술주, 반도체, 정책지원 등) 운용성과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원화표시 ETF)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국내 설정된 미국 직접투자 해외주식형 펀드의 환매일정은 평균적으로 7~8영업일의 상대적으로 긴 환매일정을 적용 받는데 반해 동 투자신탁은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므로 국내 설정된 주식형 펀드와 동일한 환매일정(4영업일)을 적용 받습니다.
※ 성장주는 향후 매출과 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특히 기술 개발로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거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때 미래에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로 주로 대형 기술기업, 반도체기업 등이 대표적인 성장주에 해당됩니다.

<운용전략>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 ETF + 국내 상장된 미국 기술주, 반도체, 정책지원 등 섹터 ETF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추구]

- 미국 대표 성장주 운용성과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ETF 선별 투자
- 미국 성장주 ETF에 원화로 투자하여 일반 해외주식 대비 빠른 해지 자금 확보 가능(우수한 환금성)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간 괴리율 차이를 활용하여 매매전략 수행]

괴리율	(+) 괴리율	(-) 괴리율
평가	고평가	저평가
운용	매도	매수

- 펀드 설정 및 환매, 수시 리밸런싱 시 동일 지수추종 ETF 간 괴리율 차이를 활용하여 매매전략 수행
- 섹터형 환노출 ETF의 경우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괴리율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하여 이를 활용한 투자 기회 활용
※ ETF 괴리율 : ETF내 자산의 등락률이 반영된 순자산가치(NAV)와 실제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가격과의 차이
(ex : 1주당 10,000원의 가치를 가진 ETF가 실제 시장에서 9,900원에 거래되는 현상)

<세부 투자 프로세스>

- 미국 대형 성장주로 구성된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ETF 선별(투자대상 종목선정 기준(ETF) 참조)
- 대형 기술주 지수 추종 상장 ETF + 대표 성장주 섹터(반도체 등) ETF +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종(예, 테크, 4차산업,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 ETF를 선별하여 투자 유니버스 구성
- 정량적, 정성적 분석에 의한 포트폴리오 구성
- 법률적 이슈,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한 최종 투자결정

주1) 정량적 분석

- 주요 팩터 활용하여 ETF 스크리닝
-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비용, 트레이딩 에러, 변동성 등 다양한 분석지표 활용
- 개별 ETF의 편입자산 구성 및 편입자산 위험도 철저 분석

주2) 정성적 분석

- 이슈점검 및 장기성장 테마 등 분석

<투자대상 종목선정 기준(ETF)>

- 트레이킹에러 점검 : 기초자산의 벤치마크지수(Index) 추종 여부
- 동일 자산군 내 아래 요인 등 팩터 분석을 통한 투자대상 종목 선정
 - ① 20일 평균거래량이 10,000 이상
 - ② 운용보수가 1.0% 미만
 - ③ 수익률 괴리는 환율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

※ 상기 종목선정 기준은 경우에 따라서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산을 편입할 수도 있으며 수익률 괴리는 환율, 휴장, 기타 비용 등 해외투자에 따른 다양한 변수에 의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급변동 등 투자대상 ETF의 전반적인 리스크수준이 상승하거나 시가총액 및 거래량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는 예시된 기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종목명	유형	운용사	주된 투자대상 (기초지수)	투자전략	설정일	설정액 (억원)	설정지 국가	투자 비중(안)
미래에셋 TIGER 미국나스닥 100TotalReturn 증권 ETF(주식-파생)(H)	ETF	미래에셋	NASDAQ 100 TOTAL RETURN	지수추종	2022-11-25	288.6	한국	27.8%
삼성 KODEX 미국 FANG 플러스 증권 ETF(주식-파생)(H)	ETF	삼성	NYSE FANG+ Index	지수추종	2019-01-08	3,923.3	한국	22.2%
삼성 KODEX 미국나스닥 100 증권 ETF(주식)(H)	ETF	삼성	NASDAQ 100 STOCK INDX	지수추종	2022-12-02	160.6	한국	22.2%
미래에셋 TIGER 미국필라델피아 반도체나스닥증권 ETF(주식)*	ETF	미래에셋	PHLX SmCondtr Sec TR	지수추종	2021-04-08	14,939.4	한국	5.6%
미래에셋 TIGER 미국테크 TOP10INDXX 증권 ETF(주식)*	ETF	미래에셋	IndUsTechTenT	지수추종	2021-04-08	13,737.9	한국	5.6%
삼성 KODEX 미국반도체 MV 증권 ETF(주식)*	ETF	삼성	MVIS US Semic 25 (Pr)	지수추종	2021-06-28	657.6	한국	5.6%
미래에셋 TIGER 모닝스타글로벌 4 차산업혁신기술증권 ETF(주식-파생)(합성 H)	ETF	미래에셋	Mstar Expon Tech PR USD	지수추종	2017-07-28	1,663.4	한국	4.4%
KBSTAR 글로벌 4 차산업 IT 증권 ETF(주식-파생)(합성 H)	ETF	KB	S&P GL 1200 INFO TECH	지수추종	2017-08-14	205.2	한국	3.3%
한국투자 ACE 미국 IT 인터넷증권 ETF(주식-파생)(합성 H)	ETF	한국투자신탁	DJ Internet Comp NTR	지수추종	2017-10-12	92.6	한국	3.3%

주1) 출처 : Bloomberg, 투자 비중(안) : ETF투자를 100%로 가정한 포트폴리오 투자비중

주2)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작성일(2023.01.31) 기준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대상자산의 일부를 제시한 예시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대상자산 및 비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지표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작성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 표시는 연헤지 ETF로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기준 환헤지 : 연헤지 비율은 8 : 2 내외이며 NAV 10% 이내에서 연헤지 ETF 투자분의 추가적인 환율변동 위험관리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대상 국가 현황>

(단위 : %, USD)

국가	주요지표	2021년	2020년	2019년
미국	경제성장률	5.9	-3.41	2.16
	1인당GDP	70,249	63,593	65,280
	소비자물가상승률	4.7	1.23	1.81
	실업률	5.5	8.05	3.67

주1) 출처 : The World Bank

주2) 상기의 지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작성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 환헤지된 국내 상장된 ETF를 집중 투자하여 외화표시 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합니다.
- 편입한 ETF 중 원화 표시임에도 실질적으로 환노출 전략으로 운용되는 자산(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피투자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기초자산(최종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환율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종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 통화인 USD에 대해서는 통화선물 또는 선도환거래를 통해 환율변동 위험관리 전략(순자산 10% 이내)을 수행합니다.
- 동일 운용사 한도 및 동일 ETF 투자비중을 준수하며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 편입 대상 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탁재산 처분에 있어서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는 한편, 환위험 회피 수단으로 통화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증거금납입 등 필요 현금성자산과 관련하여 유동성 점검을 강화합니다.
- 재간접 ETF, 레버리지 ETF 등 규제이슈 발생 소지가 있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자산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익률 변동성이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하는 포트폴리오전략을 수행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위험관리>

-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은 운용사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및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Bloomberg, Fnguide) 등을 통해 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수익률, 기초지수대비 성과, 보유 종목 및 기타 펀드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부합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 이 투자신탁은 새롭게 편입하려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비교지수와 추적오차, NAV대비 괴리율, 수익률 및 거래량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유동성 제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리스크관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 및 이로 인한 유동성 이슈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편입자산 매각과 관련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비교지수 : Nasdaq100 Index(USD) 90% + Call금리 10%**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성장주 운용성과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성장주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미국성장주 인덱스인 '나스닥100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 하였으며, 대부분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 ETF에 주로 투자 하고, 환노출형 ETF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NASDAQ100 Index는 NASDAQ Inc. 에서 산출·발표하는 지수로서 미국 나스닥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00 개사의 주가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주)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 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내용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특히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는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인 기준가격과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및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 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재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원화 표시 자산이나 실질적인 환노출전략인 자산의 환위험 관리 전략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원화 표시 자산임에도 실질적으로 환노출전략인 자산에 대하여 NAV의 10%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자통화에 대한 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NAV의 10% 수준에서 환노출전략자산은 환위험 변동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경제적인 기타변수 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화표시 자산이나 실질적으로 환노출전략인 자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헷지 거래 규모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원화표시 자산이나 실질적으로 환노출전략인 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회피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화 표시 자산이나 실질적으로 환노출전략인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 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 환율이 계약환율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 과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내용
재간접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은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당국가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전체 투자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환금성 제약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이 상장된 이후 유동성공급자가 시장거래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호가 공백이나, 거래부진 등의 사유에 따른 실시간 매매의 제약 등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잔여 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내용
환매가격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율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현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해지 위험 등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한 후 <u>2년이</u>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하고 <u>2년이</u>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련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신탁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다해 의사를 결정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용 교란 위험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하락 등에 따른 투자원본 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6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ETF는 외국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외국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①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②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③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④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 ⑤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1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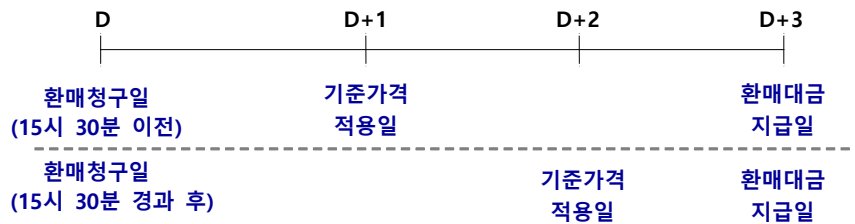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5시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 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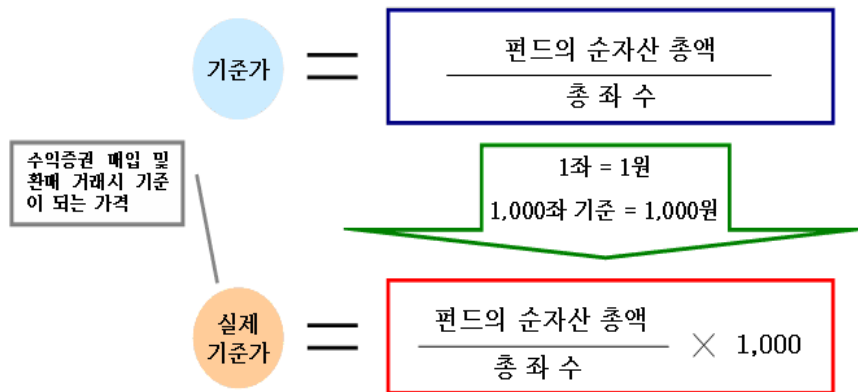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 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 가격은 1좌당 가격으로 공고합니다.

주) 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u>가격</u>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 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무증권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합니다.
 -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3% 이내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3%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 (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동종 유형 총 보수)	합성 총 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 투자기구보 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u>0.32</u>	0.50	0.03	0.013	<u>0.863</u>	-	<u>0.863</u>	0.700	<u>1.257</u>	-
수수료선취-온라인(A-e)	<u>0.32</u>	0.12	0.03	0.013	<u>0.483</u>	-	<u>0.483</u>	0.410	<u>0.877</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u>0.32</u>	0.29	0.03	0.013	<u>0.653</u>	-	<u>0.653</u>	-	<u>1,047</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u>0.32</u>	<u>0.98</u>	0.03	0.013	<u>1.343</u>	-	<u>1.343</u>	1.050	<u>1.737</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u>0.32</u>	<u>0.30</u>	0.03	0.013	0.663	-	0.663	0.590	1.05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u>0.32</u>	<u>0.31</u>	0.03	0.013	<u>0.673</u>	-	<u>0.673</u>	-	<u>1.067</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u>0.32</u>	0.03	0.03	0.013	<u>0.393</u>	-	<u>0.393</u>	-	<u>0.787</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u>0.32</u>	0.00	0.03	0.013	<u>0.363</u>	-	<u>0.363</u>	-	<u>0.757</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u>0.32</u>	0.20	0.03	0.013	<u>0.563</u>	-	<u>0.563</u>	-	<u>0.957</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u>0.32</u>	0.09	0.03	0.013	<u>0.453</u>	-	<u>0.453</u>	-	<u>0.847</u>	-
수수료미징구-	<u>0.32</u>	<u>0.29</u>	0.03	0.013	<u>0.653</u>	-	<u>0.653</u>	-	<u>1.047</u>	-

오프라인-개인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0.32	0.14	0.03	0.013	0.503	-	0.503	-	0.897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32	0.10	0.03	0.013	0.463	-	0.463	-	0.85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32	0.06	0.03	0.013	0.423	-	0.423	-	0.81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0.32	0.05	0.03	0.013	0.413	-	0.413	-	0.807	-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비용 예시 : 예약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예시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매매수수료, 대차·REPO 중개수수료 등

주3) 금융비용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실제 발생시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394%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87	279	375	583	1,20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7	361	501	804	1,704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9	131	186	303	65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0	214	312	525	1,157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7	167	240	399	869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7	249	367	621	1,37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8	282	434	761	1,73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8	365	561	984	2,23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8	139	214	376	85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8	222	342	599	1,36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9	141	217	381	86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9	224	345	604	1,37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0	83	127	223	50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1	165	254	446	1,01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7	76	117	206	46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8	159	245	429	97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1)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8	118	182	319	72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	201	309	542	1,23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C-P1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6	95	146	257	58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7	178	274	480	1,09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7	137	211	370	84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7	220	338	593	1,35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C-P2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2	106	163	285	64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2	188	290	508	1,156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7	97	150	262	59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8	180	277	485	1,10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3	89	137	240	54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4	172	264	463	1,053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2	87	133	234	532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R)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3	170	261	457	1,040
---------------------	--	----	-----	-----	-----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394%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Class A와 Class 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Class A-e와 Class 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Class A, Class A-e, Class A-G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 납입금액의 0.3%, 납입금액의 0.3%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Class S의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고, 환매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달라서 상기 수수료 및 보수·비용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lass S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실제 환매시점에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예시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최초 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 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와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 연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제외) -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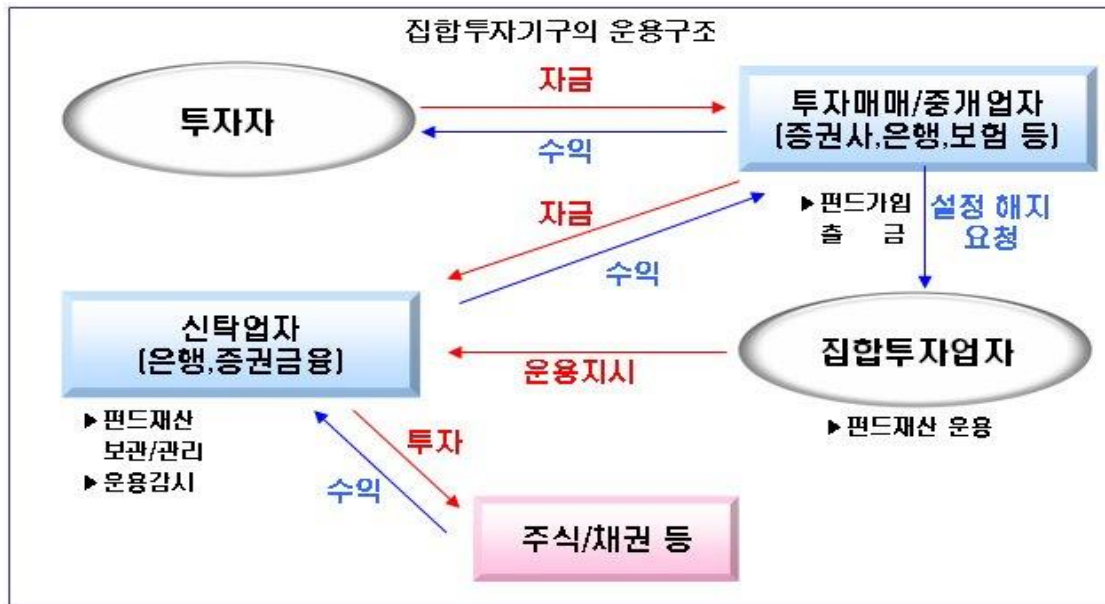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여의도동) ☎ 02-2168-7900
인터넷홈페이지	www.yurieasset.co.kr
회사연혁	1998.10 회사설립 1999.08 자산운용회사 등록 1999.10 뮤추얼 펀드 판매 게시 2000.03 투자자문업등록 2000.05 투자일임업등록
자본금	153억
주요주주현황	부국증권(주) 99.9% / 우리사주조합 0.1%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 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FY2022(25기)	FY2021(24기)	계정과목	FY2022(25기)	FY2021(24기)
유동 자산	54,407	51,793	영업 수익	16,770	19,492
비유동 자산	6,420	4,516	영업 비용	11,897	11,468
자산 총계	60,827	56,309	영업 이익	4,874	8,024
유동 부채	2,792	2,083	영업외 수익	0	16
비유동 부채	111	55	영업외 비용	17	90
부채 총계	2,903	2,138	세전 순이익	4,857	7,950
자 본 금	15,300	15,300	법인세 비용	1,104	1,770
자본 잉여금	198	198	당기 순이익	3,754	6,179
이익 잉여금	42,426	38,673			
자본 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	-	-			
자본 총계	57,924	54,170			

라. 운용자산규모

(2023.10.31 기준, 단위: 억)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35,987	790	58,365	326	2,299	-	3	-	-	97,77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 1588-7000
인터넷홈페이지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02-6714-4600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hanais.co.kr/

(2)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 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및 신탁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75 ☎ 02)2251-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6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입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외의 사유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3) 또는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③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타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한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선정원칙>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 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요소 : 매매체결능력/중개수수료/정보제공의 정도/조사분석자료의 질/결제이행능력 - 평가 주기 : 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는 개인별로 평가표를 작성. 다만, 평가주체 개인별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부서별 평가 가능 - 평가 결과 : 각 본부별로 집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결과 제출 시 개인별 평가표도 함께 제출 -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주요 펀드운용/투자관련 정보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투자 중개업자의 역량(시장정보 등 자료제공, 세미나 지원, 기업방문 등) 및 업무담당자(리서치센터, 법인영업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트레이더 : 주문체결의 정확성, 체결단가의 적합성, 시황, 매매동향 등 정보사항의 신속한 제공, 유동성 제공,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태, 자금결제의 안정성 및 업무담당자(Sales, Sale Trader, Dealer)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투자

투자주체	유리자산운용(주)
투자목적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와 운용사간 신뢰도 제고
투자승인일자	2023.02.20
투자집행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6억원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제2호에 의해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 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함)인 집합투자기구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 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 -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름 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 다.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주)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 다.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 라.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